

◎ 문제와 해설

문제 검토 결과 이의제기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해설 참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①책형

(2017 법무사)

【문41】 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②

- ① 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예** 제423호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註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등록부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

- ⑤ 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 법무사)

【문4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③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 할 수 있다.

해설 ②

- ① 규칙 제30조 (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例規】** 제111호〔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가 날인한 다음, (註 수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註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기재된 경우에도 신고인이 그대로 접수할 것을 고집한 경우라면 출생신고를 그대로 접수할 수밖에 없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 ③ 규칙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 ①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02조(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2017 법무사)

【문43】 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 ㄱ.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사람
- 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ㄷ.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 ㄹ. 제출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 ① 없음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전부

해설 ③

- ㉠ 법 제117조(벌칙) (註 ㉠, ㉡ 2명 ⇒ 법 §117)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 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 3의 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 ※ 법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법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註 위반한 사람 ⇒ 법 §117)

(2017 법무사)

【문44】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 ③ 불복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④ 위 ③항의 경우 시·읍·면의 장은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④

- ① 법 제109조(불복의 신청)
- ②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註 불복신청서는 시(구)·읍·면장을 경유하지 않고 관할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한다)
- ③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④ 법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 ①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17 법무사)

【문45】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 등·초본의 발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없다.
- ③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 ⑤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 ②

- ① **【예규】** 제494호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발급 제한)

-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 열람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또는 제적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 발급 :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 발급내역의 확인 :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인터넷에 의한 열람·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5조(열람·발급 범위 등)

- ③ ①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부 열람 및 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6조(열람·발급 신청 방법)

- ③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을 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해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발급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할 수 있다.

<제3항 신설 2016.11.25., 시행 2016.11.30>

⑤ 제9조(발급내역의 확인)

- ①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을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초본의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법무사)

【문46】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반드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④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분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2년간 보존한다.

해설 ③

- ① 법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註=우리나라 방식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법 제36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例 規】** 제485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0조(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지)
① 가족관계등록관은 등록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후, 별지 제2호 양식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규칙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註 다른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⑤ 규칙 제68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분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 제4항 10호의 장부(註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註 2년간)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 규칙 제82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2017 법무사)

【문4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

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 ①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는다.
- ② 발송명칭은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 ③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 시장 또는 ○○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④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으로 부터 송부 받은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 ⑤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가족관계등록 부에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해설 ④

- ① **【例規】** 제433호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 ② 제정 2007.12.10 예규 제4호 개정 2008.06.18 예규 제289호
- ③ 개정 2011.11.10 예규 제338호 개정 2015.01.08 예규 제433호
- ④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칭은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註 불수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시(구)의 장의 처리방법

가. 신고서의 접수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017 법무사)

【문48】 국제신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나 근친혼과 같은 혼인장에서 유는 각 당사자에게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②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③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④ 이혼의 허용여부 및 효력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에 따르되,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 ⑤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해설 ③

① 국제사법 제36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註 실질적)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註 혼인의 성립요건 중에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문제가 되는 일방적 요건과 당사자 쌍방에게 문제가 되는 쌍방적 요건이 있는 바, 전자는 각각 당사자의 본국법만 적용되지만 후자는 양 당사자의 본국법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혼인연령, 부모의 동의, 혼인의사 혼인능력 등은 일방적 요건에 해당하고 재혼금지기간, 근친혼의 금지, 중혼의 금지 등은 쌍방적 요건에 해당한다(2017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실무 529면).)

② 혼인의 (註 형식적 요건인)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② 국제사법 제40조(혼인중의 친자관계)

① 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③ 국제사법 제45조(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註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⑤ 국제사법 제43조(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2017 법무사)

【문49】 다음 설명 중 신고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가정 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②

※ 법 제122조 (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법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에 관하여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96),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기아·고아)의 성과 본 창설 허가에 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 기아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며, 기아가 아닌 고아의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예규 제214호).
- ③ 법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①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①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 ⑤ 법 제99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註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7 법무사)

【문5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자녀 중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된다.
- ②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③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상실,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④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 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해설 ⑤

- ① 법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 ②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 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
- ③

④ 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 2016.11.30.>

- 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5.29.>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016.5.29.>

[부칙<제14169호, 2016.5.29.>]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⑤ 규칙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16. 11. 30.>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15조 제4항의 특정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註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